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8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건태·김동아·김문수

모경종 • 김승원 • 이성윤

민형배 · 김성환 · 김용민

곽상언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 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 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 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 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3조의2(법왜곡) ①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 4.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지휘, 감독을 하는 자가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언 생 <u><신 설></u>	제123조의2(법왜곡) ① 검사, 사 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4.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
	면서 묵인한 경우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같다.

③ 지휘, 감독을 하는 자가 지 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 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